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8020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윤준병의원안, 윤종오 의원안)	2
2.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물가연동제 도입(윤준병의원안, 최은석 의원안)	9

I. 개요

1.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8020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윤준병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5. 2. 10.
- (3) 회 부 일 : 2025. 2. 1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진세율을 기반으로 소득에 따른 세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있으나, 급격한 물가상승과 소득 불평등 심화로 인해 저소득 및 중산층의 세부담이 실질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특히, 과세표준구간에 따른 세율 차이가 급격한 측면이 있고 고소득층과 저소득·중산층 간 세율 차이를 적절히 조정하지 않으면 조세 형평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음. 또한 현행 소득세 과세 구조는 물가상승에 따른 명목소득 증가를 반영하지 못해 실질적인 세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재조정하여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과세체계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가계 부담 완화와 조세 정의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5조).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윤준병의원안, 윤종오의원안)

현 행	개정안																																																		
□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제14조 및 제55조) ○ 구간별 세율 <table border="1"> <thead> <tr> <th>종합소득 과세표준</th><th>소득 세율</th></tr> </thead> <tbody> <tr> <td>~1,400만</td><td>6%</td></tr> <tr> <td>1,400만~5,000만</td><td>15%</td></tr> <tr> <td>5,000만~8,800만</td><td>24%</td></tr> <tr> <td>8,800만~1.5억</td><td>35%</td></tr> <tr> <td>1.5억~3억</td><td>38%</td></tr> <tr> <td>3억~5억</td><td>40%</td></tr> <tr> <td>5억~10억</td><td>42%</td></tr> <tr> <td>10억~</td><td>45%</td></tr> </tbody> </table>	종합소득 과세표준	소득 세율	~1,400만	6%	1,400만~5,000만	15%	5,000만~8,800만	24%	8,800만~1.5억	35%	1.5억~3억	38%	3억~5억	40%	5억~10억	42%	10억~	45%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 ○ 구간 조정 및 세율 조정 (윤준병의원안) <table border="1"> <thead> <tr> <th>종합소득 과세표준</th><th>소득 세율</th></tr> </thead> <tbody> <tr> <td>~1,400만</td><td>6%</td></tr> <tr> <td>1,400만~5,000만</td><td>15%</td></tr> <tr> <td>5,000만~8,000만</td><td>23%</td></tr> <tr> <td>8,000만~2억</td><td>30%</td></tr> <tr> <td>2억~3억</td><td>36%</td></tr> <tr> <td>3억~5억</td><td>40%</td></tr> <tr> <td>5억~10억</td><td>44%</td></tr> <tr> <td>10억~</td><td>48%</td></tr> </tbody> </table> (윤종오의원안) <table border="1"> <thead> <tr> <th>종합소득 과세표준</th><th>소득 세율</th></tr> </thead> <tbody> <tr> <td>~1,400만</td><td>6%</td></tr> <tr> <td>1,400만~5,000만</td><td>15%</td></tr> <tr> <td>5,000만~8,800만</td><td>24%</td></tr> <tr> <td>8,800만~1.5억</td><td>35%</td></tr> <tr> <td>1.5억~3억</td><td>40%</td></tr> <tr> <td>3억~</td><td>45%</td></tr> </tbody> </table> ○ 시행일 : 2026년 1월 1일(윤준병의원안, 윤종오의원안) ○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윤준병의원안)	종합소득 과세표준	소득 세율	~1,400만	6%	1,400만~5,000만	15%	5,000만~8,000만	23%	8,000만~2억	30%	2억~3억	36%	3억~5억	40%	5억~10억	44%	10억~	48%	종합소득 과세표준	소득 세율	~1,400만	6%	1,400만~5,000만	15%	5,000만~8,800만	24%	8,800만~1.5억	35%	1.5억~3억	40%	3억~	45%
종합소득 과세표준	소득 세율																																																		
~1,400만	6%																																																		
1,400만~5,000만	15%																																																		
5,000만~8,800만	24%																																																		
8,800만~1.5억	35%																																																		
1.5억~3억	38%																																																		
3억~5억	40%																																																		
5억~10억	42%																																																		
10억~	45%																																																		
종합소득 과세표준	소득 세율																																																		
~1,400만	6%																																																		
1,400만~5,000만	15%																																																		
5,000만~8,000만	23%																																																		
8,000만~2억	30%																																																		
2억~3억	36%																																																		
3억~5억	40%																																																		
5억~10억	44%																																																		
10억~	48%																																																		
종합소득 과세표준	소득 세율																																																		
~1,400만	6%																																																		
1,400만~5,000만	15%																																																		
5,000만~8,800만	24%																																																		
8,800만~1.5억	35%																																																		
1.5억~3억	40%																																																		
3억~	45%																																																		

* 윤준병의원안 2025. 2. 10. 발의(의안번호 8020), 윤종오의원안 2025. 9. 19. 발의(의안번호 13143)

□ 개정안은 현행 과세표준구간 및 그 세율을 일부 조정하여 소득 계층간 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윤준병의원안은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구간을 8,000만원 이하로 하되 세율은 23%로 1%p 하향하고, 현행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구간을 8,000만원 초과 2억원 이하로 하되 세율은 30%로 5%p 하향하며, 현행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를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로 하되 세율은 36%로 2%p 하향하고,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의 세율을 44%로 2%p 상향하며,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의 세율을 48%로 3%p 상향하려는 것이고,

윤종오의원안은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구간을 현행 10억원 초과에서 3억원 초과로 하향하고, 1억 5천만원 초과에서 3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은 40%를 적용하려는 것임.

□ 현재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 종합소득(명목소득)과세표준을 8개 구간으로 나누고 과세표준 금액 상승에 따라 구간별로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누진세 체계로 이루어짐.

먼저 소득세율의 연혁을 살펴보면, 1949년 법 제정시에는 17개 과표 구간에 최고세율은 65%였고 시행연도를 기준으로 1975년 70%에서 1989년 50%, 1994년 45%, 1996년 40%, 2002년 36%, 2005년 35%로 2000년대까지 최고세율이 계속적으로 인하되는 추세였는데, 2012년 이후부터는 종합소득금액 8,800만원 초과구간이 세분화되고 소득세 최고세율도 인상되고 있는 추세임.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및 최고세율은 2011년 종합소득금액 8,800만원 초과(35%)에서 2012년 종합소득금액 3억원 초과(38%)로 인상되었고,

2014년에는 최고세율 구간(38%)이 기존 3억원 초과에서 1억 5천만원 초과로 인하되었다가, 이후 다시 2017년에 5억원 초과 40%, 2018년에 5억원 초과 42%로 최고세율이 인상되었으며, 이후 2021년부터는 10억원 초과구간이 신설되어 최고세율이 45%로 상향되었으며, 2023년에는 하위 2개 소득구간의 확대 조정이 이루어졌음.

[2009년~2023년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추이]

연도 구 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6	2017	2018~ 2020	2021~ 2022	2023~
~1,200만원	6%							6%
1,200만원~1,400만원	16%	15%					15%	
1,400만원~4,600만원								
4,600만원~5,000만원	25%	24%					24%	
5,000만원~8,800만원								
8,800만원~1.5억원	35%	35%	35%	35%			35%	
1.5억원~3억원				38%	38%	38%	38%	
3억원~5억원			40%			40%		
5억원~10억원			40%		42%	42%	42%	
10억원~						45%	45%	

주: 귀속소득 연도 기준

□ 개정안과 같이 최저과세표준 금액을 상향 조정하거나 하위 과세표준 구간을 확대하는 경우 조세의 실질 부담을 조정하는 효과가 기대됨.

2022년 세법개정을 통해 하위 과세표준 구간의 조정¹⁾이 이루어졌지만, 물가 상승 속도를 고려할 때 서민들의 실질 조세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정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음.

[연도별 소비자물가지수]

연도	2011년	2013년	2015년	2017년	2019년	2021년	2023년	2024년
소비자물가지수	89.9	93.0	94.9	97.6	99.5	102.5	111.6	114.18

자료: 국가데이터처, “소비자물가조사”, 2020년=100 기준

특히 윤준병의원안의 경우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의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에서 세율을 낮추는 반면, 5억원 초과의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에서는 세율을 인상하여, 고소득자들을 중심으로 세율이 인상되어 누진적인 조세제도의 강화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1) 2022년 세법개정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 조정은 다음과 같음

소득세율	종합소득과세표준(2021년~2022년)	종합소득과세표준(2023년)
6%	~1,200만	~1,400만
15%	1,200만~4,600만	1,400만~5,000만
24%	4,600만~8,800만	5,000만~8,800만
35%	8,800만~1.5억	<좌 동>
38%	1.5억~3억	
40%	3억~5억	
42%	5억~10억	
45%	10억~	

□ 다만,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첫째,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높은 최고세율에 최고세율 적용 구간은 높으나²⁾, 중저소득구간의 실효세율은 매우 낮은 수준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초과누진세율³⁾ 구조를 지닌 현행 소득세 체계에서 개정안과 같이 하위 과세표준 구간을 확대할 경우 중산층의 세 부담은 감소하나, 상대적 고소득자의 세 부담은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함. 그러나 우리나라의 소득세 구조는 최고세율 및 최고세율 적용구간이 매우 높은 반면 중저소득구간의 실효세율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외형적으로 누진도는 매우 높으나 전반적인 소득세 실효세율이 낮아⁴⁾ 전반적인 소득재분배 기능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⁵⁾

둘째, 소득세 부담에 있어 상위 구간의 집중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구조인데 이는 세입의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022년 기준, 우리나라는 근로소득 상위 1%는 전체 근로소득의 9.7%를 점유하고, 전체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의 31.2%

2) 2022년 기준 한국의 소득세 명목최고세율은 45%로 OECD 평균 36.1%보다 높은 편으로 회원국 중 상위권에 해당하며, 우리나라의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은 과세표준 10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인데, 이는 우리나라 1인당 GDP의 23.5배로 매우 높은 수준에 해당함, 제22대 국회 조세정책 개선과제, 국회예산정책처, 2024.6.

3) 과세표준 증가에 따라 일정 구간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구조

4) 높은 최고 명목세율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평균 실효세율이 낮은 것은 비과세 감면등으로 세금이 감면되기 때문임. 제22대 국회 조세정책 개선과제, 국회예산정책처, 2024.6.

5) 성명재(2011)는 일반적으로 세부담의 누진도가 증가할수록 소득재분배효과는 높아지나 일정수준을 넘어서면 전체 세수규모가 작아져서, 누진도가 증가할수록 소득재분배효과가 떨어진다고 주장함. 또한 재분배는 지출측면에서도 행해지기 때문에 조세누진도에만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존재함. 제22대 국회 조세정책 개선과제, 국회예산정책처, 2024.6.

를 부담해 높은 조세 부담 비중을 보임. 이와 같이 소수의 근로자가 높은 비율의 세입을 부담하는 현상은 세입안정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음. 또한 세입규모의 불안정성은 세입여건이 좋을 때 지출을 늘리는 경향으로 이어져 재정적자 편향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음.⁶⁾ 따라서 고소득 구간에 대한 세율인상은 고소득층의 높은 세부담 집중도 및 한계세율⁷⁾, 고소득층에 대한 지속적인 세율인상⁸⁾, 근로 의욕 저해 우려 등의 문제를 함께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임.

셋째, 윤준병의원안에 따를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8,000만원에서 8,500만원 사이의 납세자는 이전에 비해 높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의 경우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에 대해서는 세율을 인하하여 중산층의 세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가 있으나, 상기된 구간내에서는 과세표준 구간의 조정으로 이전에 비해 더욱 높은 수준의 세부담을 지게 됨. 따라서 개정안에 따를 소득구간 별 세부담 수준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예산정책처는 윤준병의원안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조정하고, 물가연동제를 도입할 경우, 재정수입은 2026년 1.7조원 등 2026년에서 2030년까지 5년간 총 28.2조원(연평균 △5.6

6) 심혜정(2018)의 연구에 따르면 세입규모의 변동성 증가가 재정적자 편향을 크게 해 재정지출 규모를 추세적으로 증가시키고 재정의 경기안정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제22대 국회 조세정책 개선과제, 국회예산정책처, 2024.6.

7) 최고소득구간 한계세율('23년) : (우리나라) 45% (OECD) 36.4%

8) 최고소득구간 세율: ('05) 35% → ('12) 38% → ('17) 40% → ('18) 42% → ('21~) 45%

조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음.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세수추계 결과(2026~2030년)]

(단위: 조원)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윤준병의원안	△1.7	△4.8	△5.6	△7.2	△8.8	△28.2	△5.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문 의 처

02)6788-5149

2.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물가연동제 도입(윤준병의원안, 최은석의원안)

현 행	윤준병의원안	최은석의원안
☐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제14조) ☐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u>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u>	☐ (현행과 같음) ☐	☐ 과세표준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적용 ☐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u>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환산한 금액</u>
☐ 소득세율(제14조) <u><신 설></u>	☐ 소득세율 계산시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시 물가조정계수 반영(제55조제1항 후단 신설) - 해당연도 종합소득과세표준은 현행과 같음 - 서울구간별 종합소득과세표준 = 구간별 종합소득과세표준×물가조정계수 $\text{물가 조정 계수} = \frac{\text{해당연도 소비자물가 지수}}{\text{기준연도 소비자물가 지수}}$	☐ (현행과 같음)
	☐ 시행일 : 2026. 1. 1.	☐ 시행일 : 2026. 1. 1.

현 행	윤준병의원안	최은석의원안
	○ 적용례 :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적용례 :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

* 윤준병의원안 2025. 2. 10. 발의(의안번호 8020), 최은석의원안 2025. 10. 22. 발의(의안번호 13672)

□ 2건의 개정안은 매년 과세표준 설정 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하는 이른바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려는 것임.

구체적으로 윤준병의원안은 소득세율을 계산하는 단계에서 종합소득 과세표준구간 및 세율에 “기준연도 소비자물가지수에 대한 해당 연도 소비자물가지수의 비율”인 물가조정계수(이하 “물가조정계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최은석의원안은 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단계에서,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환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정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음.

□ 개정안에 의할 경우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현행 소득세 체계는 명목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일부 계층에 대해 물가 상승에 따라 실질 조세부담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즉 누진세 과표구간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물가가 상승할 경우, 실질소득이 증가하지는 않았음에도 명목소득만 상승하게 됨에 따라 납세자가 더 높은 세율 구간으로 밀려 들어가면서 평균세율·한계세율이 상승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됨⁹⁾.

예를 들어 2020년에서 2025년까지 물가상승률과 명목소득이 동일한 비율로 상승한다고 가정하면, 명목소득 인상으로 인해 일부 증가된 소득금액이 높은 단계의 과표 구간으로 이동하게 됨에 따라, 물가상승률에 따라 자연적으로 증세가 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실질세후소득은 감소하게 됨.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세후 소득 감소의 예시]

연도	명목소득	세금	세후 소득	실질세후소득	세율변화
2020년	8,500만원	1,470만원	7,030만원	7,030만원	최대 24% 적용
2025년	9,350만원	1,734.5만원	7615.5만원	6923.2만원	일부 소득 35%적용

* 2020년에서 2025년으로 10%의 물가상승 가정

이러한 과세 방식에서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전체 소득계층에서 과세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구간과 적용세율이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되어 체증적 과세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음.

실질 조세부담률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매년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해야 하지만, 매년 법률개정 절차를 반복할 경우 과도한 입법 및

9) Bracket Creep효과.

행정비용이 발생하고 납세자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어, 과표구간 등을 물가수준에 자동으로 연동시켜 실질소득세 부담 변동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음.

둘째, OECD 회원국 중 약 58%의 국가가 물가연동 세제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2022년 7월 기준 OECD 회원국 중 미국, 캐나다 등 22개국에서 물가연동 세제를 적용하고 있음¹⁰⁾.

미국은 1981년부터 물가 상승에 따라 납세자가 더 높은 세율 구간을 직면하게 되는 등 조세왜곡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과세표준 구간을 물가상승률에 연동하는 물가연동제를 시행하고 있고,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초로 산정된 생계비조정지수¹¹⁾를 활용하고 있음.

캐나다는 소득세율 구간 등을 산출할 때 소비자물가지수의 변화 비율인 물가연동률¹²⁾을 전년도 수치에 곱하는 방식의 물가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음.

□ 다만, 과세체계를 물가에 연동하는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물가연동제의 도입은 적정 조세부담 유지를 위한 입법비용을

1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소득세 물가연동제 비교연구”, 2022

11)

$$* \text{생계비조정지수} = \frac{\text{해당연도 소비자물가지수}}{\text{기준연도 소비자물가지수}} - 1$$

12)

$$* \text{물가연동률} = \frac{\text{전년도 9월 30일 기준 소비자 물가지수}}{\text{전전년도 9월 30일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경감하는 효과가 있으나, 물가상승률 외의 다양한 조세정책적 요인이 고려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자동조정장치가 합목적적인 정책수단인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현행 소득세 체계 내에서도 세율 및 과세표준을 비롯하여,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등을 조정함으로써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증가된 실질 세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¹³⁾ 특히 현행 소득세 체계에서 물가상승이 세입 및 계층별 소득세 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¹⁴⁾과 더불어 이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과세표준 뿐만 아니라 세제 전반에 일괄적으로 물가상승 요인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으므로 과세표준 구간의 자동 조정과 관련된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 제도의 도입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둘째, 과세표준 구간의 자동조정에 따라 면세자 비율이 증가하는 등 세수 감소가 우려되는 측면이 있음. 개정안은 해당연도 과세표준 산출 시 종합소득 과세표준구간에 해당 연도의 물가조정계수를 적용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어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 소득세 과세표준구간이 상승하게 됨. 이 경우 기존에 인플레이션을 통해 증대된 세원¹⁵⁾을 잃게 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 특히 연례적인 세

13) 일례로 2024년 세법개정을 통해,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제도의 소득공제 한도 상향, 신용카드 소득공제 관련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공제제도 신설 등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세법 개정이 이루어졌음.

14) Tax distortions from inflation, IMF Working Papers

15)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않는 현재의 고정 세율 구간 체계는 명목소득이 상승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납세자의 실질 소득은 증가하지 않았음에도 세 부담이 증가하여 정부가 추가적인 세수를 확보하는 효과가 발생함.

수 결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¹⁶⁾에서, 과세체계를 물가에 연동하는 경우 그 비중이 높아진 근로소득세 분야에서의 세수감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재도 면세자 비중이 높은 상황(2023년 기준 33%)에서 추가적인 면세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득세 세수감소 효과를 감안할 필요가 있음.¹⁷⁾ 이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의 조세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셋째, 호주, 일본 등 일부 국가는 물가연동제를 폐지하거나 검토 후 도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호주의 경우 1976년 과세표준 구간에 대한 물가연동제를 도입하였으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1981년 폐지하였고, 일본의 경우는 1988년 물가연동제 도입 여부를 검토했으나, 물가 하락 등으로 인한 세수 감소 우려로 도입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 한편 예산정책처는 윤준병의원안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조정하고, 물가연동제를 도입할 경우, 재정수입은 2026년 1.7조원 등 2026년에서 2030년까지 5년간 총 28.2조원(연평균 △5.6조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음.

16) 2024년 30조 8천억원, 2023년 56조 4천억원

17) 우리나라의 면세자 비중은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평가됨(미국 31.5%, 일본 15.1%, 호주 15.5%)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세수추계 결과(2026~2030년)]

(단위: 조원)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윤준병의원안	△1.7	△4.8	△5.6	△7.2	△8.8	△28.2	△5.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문 의 처

02)6788-5149